

서울특별시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치리에관한수레중개징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년월일 : 2000. 1. 11

제 출 자 : 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치리에관한법률 개정(99. 8. 9)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대행구역이 지정되어있어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원 서비스의질을 향상시키기위하 업체간의 대행구역 구분을 폐지하고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건물의 대형화로 지하2층이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에는 가압펌프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압펌프 사용에 따른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할증요금을 적용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대행구역 및 내성물량"조항을 폐지코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 나. 대행업체간 관내 전구역 자유경쟁 조항 신설(안 제10조)
- 다.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조항을 수정(안 제10조제3항)
- 라.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한다" 조항을 삽입 및 수정(안 제10조제4항)
- 마. "구정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조항을 수정(안 제10조5항)
- 바.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를 사용하여 정화조 청소시 지하할증수수료 조항 신설(안 제11조 제4항)
- 사.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을 수정 및 삭제(안 제20조제1항,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치리에관한법률제18조 및 제58조
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치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1조,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규칙 제30조제1항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을 “규칙 제30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로 하고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법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행업체간 관내 전구역 자유경쟁

제10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되, 정책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하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청소 수수료에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 사용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 한다.

제17조제1항중 “규칙 제79조, 제80조”를 “규칙 제80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규칙 제15조, 제18조”를 “규칙 제15조”로

“법 제4조의2”를 “법 제14조의2”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3호서식)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별지 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3을 삭제한다.
- 별표4를 삭제한다.
- 별지 제4호 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8호시식을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p> <p>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하여야 한다.</p> <p>⑤ 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수료 부과기준 및 정수) ① ~ ③ (생략) <심설></p> <p>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청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리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99.10.12)</p>	<p>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되, 정책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지정할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수료 부과기준 및 정수)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지하 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청소수수료에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 사용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정수 한다.</p> <p>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 -----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80조 ----- ----- -----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p> <p>1.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정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취하여야 한다.(개정 99.10.12)</p>	<p>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p> <p>1.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정소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취하여야 한다.</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중벌과 과태료의 기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3호서식)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별지 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별표 1]

분뇨 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분	기술능력	사무실	차량	차고	신고용진화	기타
분뇨수집 운반업	분뇨및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전용면적 15㎡이상	· 흡인식 차량 용량의 합계 3,6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속)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대당) - 5톤미만 : 13㎡ - 5톤이상 10톤미만: 26㎡ - 10이상:36㎡	2대 이상	- 소독조 1조이상 - 종사원 부속시설
정화 소 업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다해 업종에 4년이상 실무 에 종사한자 1인이상 나. <u>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독정화</u> 조의 정소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전용면적 15㎡이상	· 흡인식 차량용량의 합계 3,0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속)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대당) - 5톤미만 : 13㎡ - 5톤이상 10톤미만: 26㎡ - 10이상:36㎡	2대 이상	- 소독조 1조이상 - 종사원 부속시설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분	18ℓ	218			
정	화	조	기본	0.75m ³	16,840		
		초	과	0.1 m ³	1,100		
		야	간	정 화 조	7.0 %		
		하	할	정 화 조	5.0 %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 사용시)	
			청	소	요	금	

※ 구 제 방 법

○ 이의신청 : 본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내에 구청장(청소행정과청 570-6375~7, 6156)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자실

- 부과근거 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58조제3항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양식) 구청 청소행정과 비치) 작성 제출